

제 6 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을 제한 할 수 있기로 합니다.

1. 본인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으로 등록되거나 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
2. 인터넷 또는 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3.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연체한 경우
4.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5. 본인의 채권자가 구매기업에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 한 경우
6.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 및 감액, 반품,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등으로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못 받게 된 경우
7.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은행의 전자결제제도를 통해 물품 등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8. 구매기업이 본인의 자금용통만을 목적으로 추천하였거나 발주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9. 구매기업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10. 매출채권의 이중 양도 여부, 권리의 하자 및 구매기업의 항변권 유무 등에 관한 본인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제 7 조 (매출채권 청구 매입수수료 및 지급방법)

- ① 매출채권 청구 매입수수료(이하 “매입수수료”라 한다)라 함은 본인이 개별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영업점 창구를 통해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본인이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② 매입수수료는 대출 신청하는 매출채권의 건수를 기준으로 정액제 또는 매출채권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며, 은행은 개별대출의 실행 시 대출금에서 매입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지급 받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매입수수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1회 은행과 구매기업이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④ 매입수수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변경기준일 1개월 전에 변경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면책)

-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게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니다.
-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은행의 시스템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이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게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니다.

제 9 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약정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은 이를 즉시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1. 은행이 구매기업과 체결한 “미래채권담보대출 협약(발주서 방식)”이 종료된 경우
2. 구매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구매기업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구매기업이 은행에서 정한 미래채권담보대출(발주서 방식) 약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4.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발주서가 아닌 자금용통을 목적으로 발주서를 발급한 경우
5. 구매기업에서 협력업체 추천 취소를 은행에 통보한 경우
6. 본인이 타행과 중복하여 미래채권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7. 은행의 동의 없이 결제방법 및 전자결제은행을 변경한 경우
8. 구매기업에서 추천한 협력기업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납품실적 등)
9.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규정한 기한 전 변제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대출약정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제 10 조 (추가약정서의 효력)

이 추가약정서, 원 약정서,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추가약정서를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제 11 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 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인 : (인)

본인은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 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인 : (인)